

2017년 제5회 행정사__1차__행정법

<행정법>

26.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해설]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정답] ①

[관련] 객관식 문제집(이하 "객문") 201쪽 5번 / 기본서(이하 "기") 335쪽

27.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_행정사>

-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④(○)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정답] ⑤

[관련] 객문 135쪽 4번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은 규제목적에 달리 하므로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다.

ㄴ.(×) 직접강제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지문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이다.

ㄷ.(×)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ㄹ.(○)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대법원 1995.6.29. 95누4674).

[정답] ②

[유사] 객문 136쪽 7번 / 기 224쪽, 229쪽~231쪽

29.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①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의미한다.

[해설] ①(×)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

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8.9.22. 96누7342).

[정답] ①

[관련] 기 388쪽 판례

30.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2017_행정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를(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집행정지 ② 직접강제 ③ 간접강제 ④ 임시처분 ⑤ 의무이행청구

[해설] ④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정답] ④

31.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①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함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해설] ②(×) 법령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를 지정한 국세청고시의 법적 성격 및 심판의 대상 :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국세청고시는 특정 사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병마개 제조자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세청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시 그 자체가 아니라 고시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국세청장의 위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헌재 1998.4.30. 97헌마141 전원).

[정답] ②

[관련] 기 108쪽 판례 / 객문 46쪽 2번

3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②(X)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③(×)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

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정답] ⑤

[관련] 기 373쪽

34.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2017__행정사>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ㄱ)에 해당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ㄴ)에 해당한다.

- | | | | |
|------------|----------|------------|---------|
| ① ㄱ: 공용재산 | ㄴ: 공공용재산 | ② ㄱ: 공용재산 | ㄴ: 일반재산 |
| ③ ㄱ: 공공용재산 | ㄴ: 공용재산 | ④ ㄱ: 공공용재산 | ㄴ: 일반재산 |
| ⑤ ㄱ: 일반재산 | ㄴ: 공공용재산 | | |

[해설] 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국유재산법 제6조).

[정답] ①

[관련] 기 380쪽

35.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 ④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 ⑤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해설] ①(×)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된다.

⑤(×) 행정행위는 처분청에 의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정답] ④

[관련] 기 50쪽

36.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__행정사>

- ①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④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해설] ①(×) 주민의 권리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참조).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참조

④(×) 감사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참조).

⑤(×)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참조).

[정답] ③

[관련] 제4회, 제2회 행정사 기출 유사 / 객문 207쪽 4번, 212쪽 13번 유사

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국회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한국방송공사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⑤ 한국증권업협회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2조 제 2호

⑤ 한국증권업협회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8.3.27. 2007누29163).

[정답] ⑤

[관련] 객문 145쪽 1번

38.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④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 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압력단체의 활동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해설]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정답] ④

[관련] 객문 57쪽 16번 / 기 101쪽

3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③ 선거인명부예의 등록
- ④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해설] ① 판례는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②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22. 2001두8414).

③ 선거인명부예의 등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관련] 기 151쪽, 154쪽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①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 ④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해설] ①(X)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X)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③(X)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하).

④(O)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참조).

⑤(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1.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행정사>

- ① $\neg$, L
② C , $\Rightarrow$
③ $\neg$, L , C
④ L , C , $\Rightarrow$
⑤ $\neg$, L , C , $\Rightarrow$

〔관련〕 기 151쪽, 152쪽

[관련] 기 207쪽

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행정사>

-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해설] ㄱ. 사법상의 법률관계

-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3.21. 2011다95564 전합).
- ㄷ.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6.15. 99두509).
-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2.23. 2010다91206).

[정답] ④

[관련] 기 45쪽 / 객문 22쪽 25번

44.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_행정사>

- ①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설] ①(×)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 ②(○)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③(○) 행정절차법 제43조
- ④(○)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정답] ①

[관련] 제3회 행정사 기출 유사 / 객문 122쪽 3번 / 기 78쪽

45.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②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해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5.30. 97누2627).

[정답] ③

[관련] 기 159쪽, 160쪽

4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__행정사>

- 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각하한다.

-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③(○)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④(×) 적용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4조).

[정답] ③

4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⑤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해설] ②(×)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 ④(×)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헌재 1990.9.3. 90헌마13 전원).
- ⑤(×) 행정규칙은 감독권에 근거해서 발할 수 있다.

[정답] ①

[관련] 기 108쪽, 110쪽, 116쪽

48.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__행정사>

- 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③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 ④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 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 서대문구청장이 한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자는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1.14. 94누13572).

[정답] ②

[관련] 객문 202쪽 7번

4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행정사>

- 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제32조).

[정답] ⑤

[관련] 객문 187쪽 42번

5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행정사>

-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은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해설] ②(×)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정답] ②

[관련] 제4회 행정사 기출 유사 / 객문 240쪽 1번 유사